산업내 감사인간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

최기호*
윤태화**
박종성***

<요 약>

본 연구는 산업내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96-98 회계연도 사이에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분석대상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표본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에 따라 9개의 산업으로 구분되었으며,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자산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인다. 즉, 산업내에서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치열할수록 감사인 교체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감사의견이나 재무상황 변수 등은 감사인 교체방향과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주제어〉 감사인 교체, 감사품질, 감사의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주저자
** 경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논문접수일 : 2004년 4월, 게재확정일 : 2004년 5월

Ⅰ. 서 론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감사보수가 자율화되기 이전에는 초도감사 계약체결 시에 계속감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많은 감사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1] 또한 초도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기말잔액에 대한 적정성 뿐만 아니라 기초잔액의 적정성도 확인해야 하며, 영구조서 등도 새로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감사의 경우보다 기업에 훨씬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경영자나 경리담당자들이 해야 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기업들이 감사인을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

많은 연구들이 감사인 교체사유로 차별적 감사수요 이론을 제시한다. 차별적 감사수요 이론이란 감사인들이 품질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며, 기업들 역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회계감사 시장의 공급자인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인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구매자인 기업도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으로 차별화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리인비용이 큰 기업은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며, 대리인비용이 작은 기업은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감사수요 이론은 감사인들이 품질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모든 감사인들이 동일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감사인을 교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물론 감사품질이 동일하더라도 감사인별로 감사보수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면 감사인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까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해 감사보수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사인별로 보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 따라서 적어도 1999년까지는 감사보수의 차이로 인해 감사인을 교체할 동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회계감사인들이 미국처럼 품질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4] 정석우(1998)는 1995-96년 2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비율을 검토하였는데, 회계법인에 비하여 합동회계사무소 및 개인감사반의 감리지적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발견하였다. 박종성(1999) 또한 1990-95년 동안의 감리지적비율을 분석하였는데, 회계법인의 평균지적비율은 20.7%이며, 합동회계사무소의 평균지적비율은 31.6%로 회계법인보다는 합동회계사무소의 지적비율이 높음을 보였다. 변정주(2000)는 외감대상기업중 639개 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감사인간의 품질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

1) 공인회계사 보수규정(1999.2.5 폐지) 제3조에서는 초도감사의 경우 산출된 보수액에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매일경제신문(1998.3.20)에 따르면 569개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126사가 감사인을 교체하였는데, 이중 54사는 금융감독원(과거에는 증권감독원)의 지정으로 인해 교체되었으나 나머지 72사는 자발적으로 감사인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서는 감사인이 받아야 할 감사보수의 상한액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매년 감사계약서상의 감사보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감사보수가 할인되는 일이 없도록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대부분 상한액을 모두 받고 있었다.

4)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Big-5 회계법인과 기타의 회계법인이 품질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Craswell et al. 1995. Beatty 1989 등).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수용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감사인은 품질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별적 감사수요 이론의 또 다른 전제조건은 기업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배정제에서 자유수임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1990년부터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긴 하나 원칙은 자유수임제이므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회가 동일한 산업내에서 감사인들의 경쟁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한 감사인이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감사인을 교체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왜냐하면 동일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감사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상이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Sarah and Lewis 1990). 산업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적용되는 회계원칙 등이 다르므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감사기법도 산업별로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한 산업이 특정감사인에 의해 독점되었을 경우 기업은 그들이 원하는 품질의 감사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5)]

반면에 동일한 산업내에서 차별화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감사인이 존재한다면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경제적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사인 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 즉, 산업내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치열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사인 교체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내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사인 교체 동기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감사인 교체 사유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변수들이 교체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감사인 교체 사유로 제시된 변수로는 피감사회사의 의견구매 동기, 기업의 재무상황, 전임감사인의 보수적 성향, 대리인비용, 신규상장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교체 사유 중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현재에도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의견구매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느냐 하는 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은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또는 감사인과 의견마찰이 있는 기업이 기존의 감사인에 불만을 품고 감사인을 교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Chow and Rice(1982), Smith(1986) 등은 한정의견을 받고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감사인 교체를 통해 의견을 개선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효익(1990)의 연구는 의견구매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였을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음을

---

5) 또한 계속감사를 하는 경우 동종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이나 관련법규, 업계에서의 위치 및 내부통제구조의 취약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만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위험도 증대된다.

부분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외부감사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교체를 통한 의견구매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등록법인과 기타 외감대상법인의 경우 한정의견을 받은 후에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감사인을 유임시킨 기업에 비하여 교체 다음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인 교체방향과 관련되어서는 한정의견을 받은 후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고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에 비하여 유명감사인에서 비유명감사인으로 교체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였다. 이효익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감사회사가 의견구매를 목적으로 감사인 교체를 시도할 경우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입증해 준다.

Schwartz and Menon(1985), Dhaliwal et al.(1993) 등은 감사인 교체원인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의 악화를 들고 있다. 재무상황이 악화될수록 경영자의 재무제표 분식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경영자와 감사인사이의 갈등이 증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감사인을 모색하며, 이는 곧 감사인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두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박종성과 최기호(2000)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의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감사인 교체방향까지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6] 이들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낮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하향교체기업일수록 교체 직후에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음도 보였다.

Kirshnan(1994), DeFond and Subramanyam(1998) 등은 전임감사인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감사인 교체사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전임감사인이 회계원칙을 적용하거나 중요성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우 이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감사인을 교체할 확률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Francis and Wilson(1988), DeFond(1992) 정문종(1997) 등은 대리인비용 측면에서 감사인 교체동기를 분석하고 있다. 회계감사의 일차적 기능은 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므로 대리인비용이 큰 기업은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할 것이며, 반면에 대리인비용이 작은 기업은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는 (1) 경영자의 주식소유비율, (2) 회계자료에 기초한 보너스 계획의 존재여부, (3)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비율, (4) 레버리지비율(장기부채/총자산) 등이 있다. 특히 DeFond(1992)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리인 비용의 변화가 감사인 교체를 유발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처럼 대리인 비용 측면에서 감사인 교체를 분석한 연구들은 교체방향까지도 고려하였다는데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Carpenter and Strawser(1971)는 non-big 8에서 big 8으로의 교체는 신규발행주식의 시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형회계법인일수록 주식가치평가에 이용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Titman and Trueman(1986) 역시 이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감사인 교체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7]

---

6) 이들은 감사인 교체를 상향교체, 수평교체, 하향교체로 구분하였다. 상향교체란 낮은 품질의 감사인에서 높은 품질의 감사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여, 수평교체란 동일한 품질의 감사인으로의 교체를 말한다. 하향교체는 높은 품질의 감사인에서 낮은 품질의 감사인으로의 교체를 의미한다.

7) 이 밖에도 Francis and Wilsom(1988), Johnson and Lys(1990), Haskins and Williams(1990), Defond (1992) 등이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연구에서 신주발행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

산업별로 거래의 특성이 다르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나 보고 방법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금융업의 경우에는 복잡한 EDP 기술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재무제표 계정과목도 제조업과 많이 다르다. 또한 몇몇 산업은 선물환계약이나 스왑계약과 같은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빈번하게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기건설공사에 대한 수익인식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백화점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 및 재고자산 평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처럼 산업별로 회계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감사기법도 산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감사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상이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Sarah and Lewis(1990)의 연구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인 감사 경험과 특정산업 혹은 특정고객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중 어느 것이 감사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험이 많은 감사인일수록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특정산업이나 고객에 대한 특화된 지식이 감사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일한 규모나 평판을 지니고 있는 감사인이라 하더라도 산업별로 특화된 지식의 소유 정도에 따라 상이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Shockley and Holt(1983)는 시장이 Big 8들간에도 산업별로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감사인의 시장점유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은행업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진 감사인이 그 산업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고하였다.[8] 이들은 시장점유율이 산업전문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인식되며, 감사품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Craswell et al.(1995)은 호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서 Big 8이 non-Big 8에 비해 감사수수료를 30% 이상 더 받고 있으며, 같은 Big 8 내에서도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비전문감사인보다 34% 정도의 초과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Big 8 내에서도 특정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소유 여부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품질의 차이가 수수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문종(1997)은 국내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 감사수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감사품질 대용변수로 산업별 전문감사인 분류와 유명감사인 분류 2가지를 사용하였는데, 차별적 품질의 감사인 분류기준으로 산업별 전문감사인 분류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9]

Ⅲ. 연구방법

8) 이밖에도 Palmrose(1984), Defond(1992) 등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전문감사인 여부를 평가하였다.

9) 이들은 외국 Big-6와의 업무제휴 여부에 따라 감사인을 유명감사인과 비유명감사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산업별로 다른 감사인과 현저한 시장점유율 차이를 보이는 상위 1개 또는 2개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정의하였다.

1. 표본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산업내에서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96-98 회계기간 동안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을 연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10] 단, 동기간 중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거나 도중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게 된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인 교체 여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속산업이 미정인 기업과 소속기업이 많지 않은 일부 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11] 그 이유는 소속기업이 많지 않은 산업의 경우 그 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경쟁정도 측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표본규모를 보여준다. 총 5,292개 기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에서 1회 이상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1,747개 기업으로 교체율은 33%이다.

우리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96-98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명단과 해당기업의 감사인, 감사의견 그리고 기본적인 재무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

(1) 실험집단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인데, 분석대상기간(96-98회계연도) 중 1회 이상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교체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험집단을 교체방향[1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체방향에 따라 감사인 교체의 동기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① **전체표본집단** : 감사인 교체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인 교체 기업으로 구성된 집단(n=1,747)

② **비유명감사인 집단** : 전체표본집단에서 상향이나 하향교체가 있었던 기업을 제외하고 비유명감사인에서 비유명감사인으로 수평교체한 기업만으로 구성된 집단(n=747)

③ **유명감사인 집단** : 전체표본집단에서 상향이나 하향교체가 있었던 기업을 제외하고 유명감사인에서 유명감사인으로 수평교체한 기업만으로 구성된 집단(n=370)

(2) 통제집단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에 대응하여 분석대상기간(96-98회계연도) 중 감사인 교체가 전혀 없었

---

10) 1999년 2월부터 보수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할 경우 표본의 동질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1998년 이전을 연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11)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으로는 1차 산업, 전기·가스 산업, 음식·숙박산업 등이다.

12) 선행연구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감사인은 Big-6 회계법인과 기타의 회계법인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미국의 Big-6회계법인과 업무제휴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유명감사인과 비유명감사인으로 구분한다. 감사인의 유형이 이와 같이 구분된다면 감사인교체는 그 교체방향에 따라 상향교체, 수평교체, 하향교체로 분류될 수 있다. 상향교체는 비유명감사인에서 유명감사인(Big-6회계법인과 업무제휴 회계법인)으로 교체한 경우이며, 하향교체는 그 반대로 유명감사인에서 비유명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이다. 그리고 수평교체는 유명감사인에서 유명감사인으로 혹은 비유명감사인에서 비유명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가 해당된다.

던 기업으로 구성되는데, 실험집단의 분류유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① 전체표본집단 : 모든 비교체기업으로 구성한 집단(n=3,545)
② 비유명감사인 집단 : 전체표본집단에서 비유명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았던 기업만으로 구성된 집단(n=1,579)
③ 유명감사인 집단 : 전체표본집단에서 유명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았던 기업만으로 구성된 집단(n=1,966)

나. 회계감사시장의 구분

본 연구에서 경쟁정도는 회계감사시장별로 측정된다. 회계감사시장은 산업과 기업규모에 따라 18개 시장으로 구분된다. 산업은 9개의 산업으로 분류되며,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다시 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으로 구분된다. 산업의 분류기준과 규모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에 따른 구분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9개의 산업으로 구분된다. 다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광업과 전기·가스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소속 기업규모가 작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류코드 D1 : 음식료(음식료, 섬유, 가죽·가방·모피제조업 포함)
분류코드 D2 : 석유 및 기계(목재, 종이, 펄프, 석유, 프라스틱, 유리, 1차금속, 기계제조업 포함)
분류코드 D3 : 전기(컴퓨터, 전기, 전자, 자동차, 가구제조업 포함)
분류코드 F : 건설업
분류코드 G : 도·소매업
분류코드 I : 운수·창고업
분류코드 J : 금융업
분류코드 K : 임대업(부동산임대, 기계장비임대, 기술서비스업 포함)
분류코드 O : 기타(기타서비스업)

(2) 기업규모에 따른 구분

기업규모에 따른 구분은 분석대상기간인 96-98 회계연도 기간의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한다. 현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참여가 제한된다. 즉,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감사반이 감사할 수 없으므로 경쟁정도가 원천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균 총자산장부가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한다.

〈**표 1**〉 표본기업의 분포

		소규모 기업[a]			대규모 기업[b]		
업종구분[c]	집단구분[d]	비교체[e]	교체[f]	합계	비교체	교체	합계
음식료품	전체[g]	343	168	511	93	55	148
	비유명[h]	204	89	293	34	12	46
	유명[i]	139	10	149	59	16	75
섬유	전체	780	386	1,166	235	153	388
	비유명	382	216	598	69	28	97
	유명	398	54	452	166	54	220
기계	전체	404	175	579	127	77	204
	비유명	184	82	266	32	12	44
	유명	220	21	241	95	29	124
건설	전체	306	168	474	97	59	156
	비유명	193	106	299	42	20	62
	유명	113	19	132	55	19	74
유통	전체	247	124	371	88	29	117
	비유명	116	67	183	21	5	26
	유명	131	19	150	67	12	79
운수창고	전체	114	36	150	35	21	56
	비유명	47	20	67	12	6	18
	유명	67	8	75	23	8	31
금융	전체	45	22	67	219	139	358
	비유명	18	7	25	54	24	78
	유명	27	5	32	165	67	232
임대	전체	221	68	289	49	16	65
	비유명	111	33	144	9	2	11
	유명	110	17	127	40	7	47
기타	전체	92	40	132	50	11	61
	비유명	36	16	52	15	2	17
	유명	56	4	60	35	1	36
합계	전체	2,552	1,187	3,739	993	560	1,553
	비유명	1,291	636	1,927	288	111	399
	유명	1,261	157	1,418	705	213	918

a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
b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c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에 따름
d 분석대상 표본집단의 분류
e 96-98년 중 감사인을 교체하지 않은 기업
f 96-98년 중 1회 이상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
g 전체표본기업을 의미함.
h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와 업무제휴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I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와 업무제휴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이상과 같이 산업을 9개의 산업으로 구분하고 또한 각각의 산업별로 소속기업을 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였으므로 회계감사시장은 총 18개로 구분된다. 구분된 회계감사시장별 표본기업의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의 설정

가.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업내에서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감사인 교체 여부가 되며, 독립변수는 경쟁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는 경쟁정도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logit 모형을 설정한다.

$$CHG = \beta_0 + \beta_1 OPN + \beta_2 TA + \beta_3 DE + \beta_4 ROA + \beta_5 H + \beta_6 OPN * H + \beta_7 TA * H + \beta_8 DE * H + \beta_9 ROA * H$$

변수설명 :

CHG_{ijk} : 교체기업인 경우 1, 비교체기업인 경우 0

OPN_{ijk} : 비적정의견기업은 1, 적정의견기업은 0

TA_{ijk} : 96-98년 간의 평균총자산장부가액

DE_{ijk} : 96-98년간의 평균부채비율

ROA_{ijk} : 96-98년간의 평균총자산수익률

H는 산업의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표본별로 다음과 같이 측정함

전체표본집단 : $H_i = \sum_{j}^{n} ms_{ij}^2$

비유명감사인 집단 : $H_i = \sum_{j \in NonBig} ms_{ij}^2$(Non Big : 미국 Big-6 회계법인과 제휴관계가 없는 감사인)

유명감사인 집단 : $H_i = \sum_{j \in Big} ms_{ij}^2$ (Big : 미국 Big-6 회계법인과 업무제휴한 감사인)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감사인 교체 여부(CHG)이다. 전체표본집단에서 분석대상기간인 96-98 회계연도 사이에서 1회 이상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교체기업으로 구분되며, 분석대상기간 중 감사인을 교체하지 않은 기업은 비교체기업으로 구분된다. 비유명감사인 집단에서는 분석대상 기간 중 1회 이상 비유명감사인에서 비유명감사인으로 수평교체한 기업을 교체기업으로 구분하며, 비유명감사인으로부터 교체없이 계속감사를 받은 기업을 비교체기업으로 구분한다. 유명감사인 집단에서는 유명감사인에서 유명감사인으로 수평교체한 기업을 교체기업으로 구분하며, 유명감사인으로부터 교체없이 계속감사를 받은 기업을 비교체기업으로 구분한다.

각 표본집단(전체표본집단, 비유명감사인 집단, 유명감사인 집단)별로 i번째 회계감사시장에 속한 j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번째 기업의 CHG_{ij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HG_{ijk} : 교체기업인 경우 1, 비교체기업인 경우 0

다.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교체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OPN, TA, DE, ROA)과 회계감사시장에서의 경쟁정도(H), 그리고 교체동기 변수들과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1)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 관련변수

피감사기업은 감사의견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다(Chow & Rice, 1982 ; Krishinan, 1994). 감사의견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적정의견이며 다른 하나는 비적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기간 중에 1회 이상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을 비적정의견 기업으로 구분하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 중에 계속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적정의견 기업으로 구분하고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감사의견(OPN)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부호는 양(+)이다. 각 표본집단별로 i번째 회계감사시장에 속한 j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번째 기업의 OPN_{ij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OPN_{ijk} : 비적정의견기업은 1, 적정의견기업은 0

기업의 규모는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ancis and Wilson 1988 ; DeFond 1992).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외부회계감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며,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규모(TA)는 분석대상기간 중 재무제표상 총자산장부가액의 평균으로 측정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부호는 음(-)이다. 각 표본집단별로 i번째 회계감사시장에 속한 j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번째 기업의 TA_{ij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A_{ijk} : 96-98년 간의 평균총자산장부가액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은 감사인 교체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wartz & Menon, 1985 ; 정문종, 1997). 재무적으로 불건전한 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감사인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재무적 건전성을 부채비율(DE)과 총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하였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분석대상기간 중의 평균값이다. 총자산수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분석대상기간 중의 평균값이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수익률이 낮을수록 재무적으로 불건전한 것이므로 부채비율이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부호는 양(+)이며, 총자산수익률이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부호는 음(-)이다. 각 표본집단별로 i번째 회계감사시장에 속한 j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번째 기업의 DE_{ijk}와 ROA_{ij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E_{ijk} : 96-98년간의 평균부채비율

ROA_{ijk} : 96-98년간의 평균총자산수익률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이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특정산업의 재무비율이 다른 산업의 재무비율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재무비율을 산업별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2)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 변수

본 연구는 회계감사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할수록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감사시장은 9개 산업과 대규모 기업 및 소규모 기업으로 구분되므로 모두 18개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각각의 회계감사시장별로 회계감사인간의 경쟁정도를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한다.[13] Herfindahl Index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감사인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합으로 측정된다. i번째 회계감사시장에 n명의 회계감사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j번째 회계감사인의 시장점유율을 ms_{ij}라고 하면 Herfindahl Index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전체표본집단 : $H_i = \sum_{j}^{n} ms_{ij}^2$

비유명감사인 집단 : $H_i = \sum_{j \in NonBig} ms_{ij}^2$(Non Big : 미국 Big-6 회계법인과 제휴관계

13) Yadley et al.(1992), Johnson et al.(1995) 등이 경쟁정도의 대용변수로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였다.

가 없는 감사인)

유명감사인 집단 : $H_i = \sum_{j \in Big} ms_{ij}^2$(Big : 미국 Big-6 회계법인과 업무제휴한 감사인)

위 식에서 시장점유율인 ms_{ij}는 i 회계감사시장의 수입규모에서 j 회계감사인이 점유하고 수입규모의 비율인데, 우리나라처럼 감사보수가 공개되고 있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수입규모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피감사회사의 총자산규모의 제곱근을 감사보수에 대한 대용변수로 이용한다.[14] 따라서 Herfindahl Index를 구하기 위한 특정 회계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인의 시장점유율은 i번째 시장에 소속되어 j번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고 있는 k번째 기업의 총자산장부가액을 TA_{ijk}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전체표본집단 : $ms_{ij} = \frac{\sum_k \sqrt{TA_{ijk}}}{\sum_j \sum_k \sqrt{TA_{ijk}}}$

비유명감사인 집단 : $ms_{ij} = \frac{\sum_k \sqrt{TA_{ijk}}}{\sum_{j \in NonBig} \sum_k \sqrt{TA_{ijk}}}$

유명감사인 집단 : $ms_{ij} = \frac{\sum_k \sqrt{TA_{ijk}}}{\sum_{j \in Big} \sum_k \sqrt{TA_{ijk}}}$

Herfindahl Index는 18개로 구분된 회계감사시장별로 각각 측정된다. 그리고 비유명감사인 집단에서는 비유명감사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되며, 유명감사인 집단에서는 유명감사인만을 대상으로 측정된다. Herfindahl Index가 작을수록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Herfindahl Index가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부호는 음(-)이다.

(3)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와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클수록(Herfindahl Index가 작을수록)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가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이는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들(OPN, TA, DE, ROA)과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Herfindahl Index간의 상호작용효과이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 변수들과 회계감사시장별 Herfindahl Index간의 곱으로 표시되는 상호작용 변수가 독립변수로 추가되었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회계감사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이러한 교체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감사의견(OPN)과 Herfindahl Index간의 상호작용효과(OPN*H)가 종속변수인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은 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규모(TA)가 작을수록 그리고 Herfindahl Index가 작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규모와 Herfindahl Index와의 상호작용효과(TA*H)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양(+)의 예측부호를 갖는다. 부채비

14) 이처럼 총자산규모를 시장점유율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총자산규모가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율(DE)이 높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채비율과 Herfindahl Index간의 상호작용효과(DE＊H)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음(-)의 예측부호를 갖는다. 동일하게 총자산수익률(ROA)이 낮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총자산수익률과 Herfindahl Index간의 상호작용효과(ROA＊H)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양(+)의 예측부호를 갖는다.

Ⅳ. 실증분석

1. 회계감사시장별 경쟁정도와 감사인 교체비율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시장별로 Herfindahl Index와 감사인 교체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 회계감사시장별 경쟁정도와 감사인 교체비율

		소규모기업a		대규모기업b	
업종구분[c]	집단구분[d]	경쟁정도[e]	교체비율[f]	경쟁정도	교체비율
음식료품	전체[g]	0.0606	0.3288	0.1055	0.3716
	비유명[h]	0.0737	0.3038	0.2252	0.2609
	유명[i]	0.2211	0.0671	0.2011	0.2133
석유	전체	0.0571	0.3311	0.1128	0.3943
	비유명	0.0515	0.3612	0.2447	0.2887
	유명	0.1874	0.1195	0.1790	0.2455
전기	전체	0.0698	0.3023	0.1557	0.3775
	비유명	0.0624	0.3083	0.2710	0.2727
	유명	0.1995	0.0871	0.2379	0.2339
건설	전체	0.0444	0.3544	0.1138	0.3782
	비유명	0.0346	0.3545	0.1456	0.3226
	유명	0.2392	0.1439	0.2427	0.2568
유통	전체	0.0578	0.3342	0.1266	0.2479
	비유명	0.0549	0.3661	0.2364	0.1923
	유명	0.1874	0.1267	0.1863	0.1519
운수창고	전체	0.0807	0.2400	0.1382	0.3750
	비유명	0.0805	0.2985	0.1481	0.3333
	유명	0.2115	0.1067	0.2479	0.2581
금융	전체	0.0763	0.3284	0.1449	0.3883
	비유명	0.1189	0.2800	0.2249	0.3077
	유명	0.1958	0.1563	0.1929	0.2888
임대	전체	0.0806	0.2353	0.1862	0.2462
	비유명	0.0853	0.2292	0.3179	0.1818
	유명	0.2490	0.1339	0.2775	0.1489
기타	전체	0.0899	0.3030	0.1354	0.1803
	비유명	0.1008	0.3077	0.1798	0.1177
	유명	0.2456	0.0667	0.2806	0.0278
상관계수j	전체		-0.7102**		-0.3471
	비유명		-0.6938**		-0.3412
	유명		-0.1870		-0.5158*

a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
b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c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에 따름
d 분석대상 표본집단의 분류
e 96-98년 평균 Herfindahl Index
f 96-98년 중 전체표본기업 중에서 1회 이상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의 비율
g 전체표본기업을 의미함.
h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 업무제휴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I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 업무제휴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j 산업간 경쟁정도와 교체비율의 피어슨 상관계수임(n=9) * $p<0.1$ ** $p<0.05$

위의 <표 2>는 9개 산업에 대한 경쟁정도와 감사인 교체비율간의 피어슨상관계수를 기업규모별로 각각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의 예측은 경쟁정도가 높을수록(H가 낮을수록) 감사인 교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표 2>는 이러한 가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예측방향과 일치하며, 6개의 상관계수 중 4개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값을 보이고 있다.

2. 단일변량분석

다변량 logit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독립변수)들이 실험집단(감사인 교체기업)과 통제집단(감사인 비교체기업)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표 3>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 3>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해 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경쟁정도 변수(H)에 대한 T-TEST 결과는 대체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기업에서는 전체표본집단과 비유명감사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p<0.01$), 대규모기업에서는 유명감사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차이의 방향은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H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교체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소속된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를 나타내는 재무변수 중 기업규모(TA)에 대한 T-TEST결과는 대체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차이의 방향은 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규모 기업에서는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교체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반대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교체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기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와 관련된 변수들은 대체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나 본 연구에서의 예측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대상기간 중에 IMF 외환위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3〉 감사인 비교체기업과 감사인 교체기업 간의 설명변수 값 비교

		소규모a			대규모b		
설명변수	집단구분[c]	비교체기업[d]	교체기업[e]	통계량[f]	비교체기업	교체기업	통계량
OPN	전체g	433	232	3.3820**	100	64	0.6990
	비유명h	215	112	0.2770	25	10	0.0110
	유명i	218	36	3.0230*	75	18	0.6780
TA	전체	-0.0223	0.0480	-2.0048**	0.0587	-0.1040	3.0951***
	비유명	-0.1527	-0.1415	-0.2536	-0.1370	-0.3092	2.9778***
	유명	0.1111	0.2668	-1.7630*	0.1386	0.0841	0.5733
DE	전체	0.0004	-0.0009	0.0390	0.0277	-0.0491	1.4586
	비유명	-0.0280	0.0199	-1.0851	0.0615	-0.1546	2.1973**
	유명	0.0296	-0.0315	0.6277	0.0139	0.0413	-0.3313
ROA	전체	0.0073	-0.0156	0.6511	-0.0313	0.0555	-1.6485*
	비유명	0.0379	0.0148	0.6254	-0.0187	0.3021	-3.1022
	유명	-0.0241	-0.0712	0.4383	-0.0365	-0.0614	0.3025
H	전체	0.0627	0.0613	3.6740***	0.1317	0.1303	1.2680
	비유명	0.0606	0.0582	2.8508***	0.2214	0.2178	0.7371
	유명	0.2073	0.2071	0.1044	0.2106	0.2054	2.0531**

OPN 96-98년 간에 비적정의견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1, 아니면 0
TA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을 산업별 규모별로 표준화한 값
DE 96-98년 평균 부채비율을 산업별 규모별로 표준화한 값
ROA 96-98년 평균 총자산수익률을 산업별 규모별로 표준화한 값
H 산업별 규모별 Herfindahl Index로 전체집단인 경우에는 모든 감사인에 대한 지표이며, 비유명감사인 집단의 경우에는 비업무제휴법인 간의 지표, 그리고 유명감사인 집단의 경우에는 제휴법인 간의 지표이다.
a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
b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c 분석대상 표본집단의 분류
d 96-98년 중 감사인을 교체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설명변수 평균 값(OPN은 비적정의견의 빈도 수)
e 96-98년 중 1회 이상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집단의 설명변수 평균 값(OPN은 비적정의견의 빈도 수)
f 평균 값에 대한 T통계량과 빈도에 대한 $\chi 2$ 통계량 * $p<0.1$ ** $p<0.05$ *** $p<0.01$
g 전체 기업표본을 의미함.
h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 업무제휴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I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 업무제휴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 각 집단별 표본규모는 <표 1> 참조할 것.

3. 다변량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logit 모형을 이용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변량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해 준다.

첫째,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H변수는 예측방향과 일치하는 계수 값을 보이며,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전체집단에 있어서는 소규모기업, 비유명감사인 집단에서는 소규모기업 그리고 유명감사인 집단에서는 대규모기업이 속한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클수록 감사인의 교체가능성을 높아짐을 보여준다.

둘째, 감사의견(OPN)은 예측부호와 일치하는 계수 값을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와 감사인 교체와의 관계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만이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즉, 계수의 부호가 예측과 일치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집단은 예측부호와 일치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소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재무적으로도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회계감사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감사인 교체를 실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DE)과 총자산수익률(ROA)의 계수 값은 각 집단별로 일관성이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대부분 유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 건전성이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상향교체기업과 하향교체기업을 함께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다. 박종성과 최기호(2000)는 상향교체기업에 비하여 하향교체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였다. 본 연구도 상향교체와 하향교체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재무상황이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째, 피감사기업의 교체동기 관련변수들과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갖는 상호작용효과에 있어서는 일부 집단에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면 대규모

〈표 4〉 logit분석 결과

		전체집단[a]		비유명감사인 집단[b]		유명감사인 집단[c]	
변수	예측부호	소규모[d]	대규모[e]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OPN	+	0.575	1.113	0.195	1.906	1.359	0.142
		(0.234)	(0.897)	(0.167)	(0.667)	(0.471)	(0.006)
TA	-	0.134	-1.122	0.180	-13.410	0.807	-0.654
		(0.455)	(5.668**)	(0.901)	(5.463**)	(1.261)	(1.703)
DE	+	0.144	-0.765	0.276	0.703	-0.704	-1.041
		(0.404)	(2.855*)	(1.699)	(0.528)	(0.515)	(2.199)
ROA	-	0.234	0.092	0.315	1.861	-0.737	0.022
		(1.221)	(0.040)	(1.146)	(3.880**)	(0.715)	(0.001)
H	-	-10.577	-1.954	-7.737	16.184	1.346	-5.284
		(8.899***)	(0.507)	(5.999***)	(3.312)	(0.095)	(3.584**)
OPN*H	-	-5.988	-7.174	-2.580	-7.839	-4.554	-1.950
		(0.532)	(0.630)	(0.110)	(0.610)	(0.232)	(0.050)
TA*H	+	-0.928	6.687	-2.876	43.548	-3.171	2.906
		(0.086)	(3.987**)	(0.857)	(3.587**)	(0.842)	(1.586)
DE*H	-	-3.348	5.451	-3.762	-3.418	2.521	5.165
		(0.785)	(2.654*)	(1.106)	(0.724)	(0.305)	(2.299*)
ROA*H	+	-4.660	-0.185	-4.819	-6.173	3.008	-0.231
		(1.744)	(0.003)	(1.244)	(2.639*)	(0.541)	(0.004)
CONSTANT		-0.148	-0.354	-0.252	-5.719	-2.484	-0.072
		(0.444)	(0.939)	(1.702)	(6.813***)	(7.408***)	(0.016)
MODEL χ^2		25.911***	26.366***	13.202	40.466***	10.328	11.409

OPN 96-98년 간에 비적정의견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1, 아니면 0

TA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을 산업별 규모별로 표준화한 값

DE 96-98년 평균 부채비율 산업별 규모별로 표준화한 값

ROA 96-98년 평균 총자산수익률을 산업별 규모별로 표준화한 값

H 산업별 규모별 Herfindahl Index로 전체집단인 경우에는 모든 감사인에 대한 지표이며, 비유명감사인 집단의 경우에는 비업무제휴법인 간의 지표, 그리고 유명감사인 집단의 경우에는 제휴법인 간의 지표이다.

a 전체표본기업을 의미함.

b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 업무제휴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c 96-98년 지속적으로 미국의 Big-6 업무제휴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d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

e 96-98년 평균 총자산장부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f 계수 값

g 회귀계수 값에 대한 χ2 통계량 * p<0.1 ** p<0.05 *** p<0.01

※ 각 집단별 표본규모는 <표 1> 참조할 것.

기업집단에서 기업규모변수와 경쟁정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예측과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다른 변수들과 갖는 상호작용효과는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산업내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96-98 회계연도 사이에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분석대상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표본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에 따라 9개의 산업으로 구분되었으며,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자산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인다. 즉, 산업내에서 감사인간의 경쟁정도가 치열할수록 감사인 교체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감사의견이나 재무상황 변수 등은 감사인 교체방향과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인 지정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96-98 회계연도 기간 중에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감사인 교체기업 중에는 금융감독원의 지정으로 인한 교체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정기업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감사인 교체방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인 교체는 상향교체, 하향교체, 수평교체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교체방향에 따라 감사인 교체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하향교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가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추후에 감사인 교체방향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대상기간 중 일부에 IMF 관리체제에 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 외환위기 기간이 아닌 정상적인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하면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성. 1999. 피감사회사 특성과 감사인 특성을 이용한 감리리적 예측. *회계학연구 24(제1호)* : 1-32.

박종성, 최기호. 2000. 자발적 감사인 교체와 이익조정. 미발표논문.

변정주. 2000. 기업유형과 회계감사인 유형이 회계감사품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논문

이효익. 1990.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11 : 1-36

정문종. 1994. 자유수임제와 감사인의 독립성-실증분석. *회계학연구* 19 : 247-273.

정문종. 1997. 대리인 비용, 사적정보의 문제 및 기타 기업특성과 기업의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22(제4호)* : 91-121.

Chow,W.C. and S.J.Rice. 1982.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Auditor Switching. *The Accounting Review*(April) : 326-335.

Craswell, A., J. Francis, and S. Taylor. 1995. Auditor Brand Name Reputations and Industry Specializ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December) : 297-322.

Danos,P. and J.W.Eichenseher.1982. Audit Industry Dynamics :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Client-Industry Market Sha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 604-616.

Danos,P. and J.W.Eichenseher. 1986. Long-Term Trends Towards Seller Concentration in the U.S. Audit Markets.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 633-650.

Defond, M. L. 1992.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Client Firm Agency Costs and Auditor Switching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Spring) : 16-31.

Dhaliwal, D., J. Schatzberg, and M. Trombley. 1993. An Analysis of the Economic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Preceding Auditor Chang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2(Fall) : 22-37

Eichenseher,J.W. and P.Danos. 1981. The Analysis of Industry-Specific Auditor Concentration : Towards an Explanatory Model. *The Accounting Review* (July) : 479-492.

Eichenseher, J. W. and D. Shields. 1983. The Correlates of CPA firm Change for Publicly-Held Corporation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Spring) : 23-37.

Francis, J. R. and E. R. Wilson. 1988. Auditor Changes : A Joint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s.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 663-682.

Haskins, M. E. and D. D. Williams. 1990. A Contingent Model of Intra-Big Eight Auditor Chang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 55-74.

Johnson, W.B. and T. Lys. 1990. The Market for Audit Service-Evidence from Voluntary Auditor Chang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12) : 133-199.

Johnson, E. N., K. B. Walker, and E. Westergaard. 1995. Supplier Concentration and Pricing of Audit Services in New Zealand.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 74-89.

Krishinan,J. 1994. Auditor Switching and Co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 200-215.

Krishinan, J. & J. Krishnan. 1997. Litigation Risk and Auditor Resignations.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 539-560.

Maddala, G. S. 1991. A Perspective on the Use of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Models in Accounting Research.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 788-807.

Maher, M.W., P.Tiessen, R.Colson and A.J.Broman. 1992. Competition and Audit Fees. *The Accounting Review*(January) : 199-211.

Rhode,J.G. and G.M.Whitsell and R.L.Kesey. 1974. An Analysis of Client-Industry Concentration for Large Public Account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 772-787.

Sarah, E., and B. Lewis. 1990. Determinants of Auditor Expertis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8(Supplement) : 1-28.

Schwartz, K. B. and K. Menon. 1985.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April) : 248-261.

Shockley, R., and R. Holt. 1983. A Behavioral Investigation of Supplier Differentiation i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1(Autumn) : 545-564.

Smith, D. 1986. Auditor 'Subject to' Opinions, Disclaimers and Auditor Chang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 95-108.

Tomczyk,S. and W.J.Read. 1989. Direct Measurement of Supplier Concentration i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 98-106.

Williams, D. D. 1988.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Auditor Change.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Summer) : 243-261.

Yadley,J.A., N.L.Kauffman, T.D.Cairney and W.D.Albrecht.1988. Supplier Behavior in U.S. Audit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 151-184.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n Auditor Change

Giho Choi*
Taehwa Yoon**
Jongsung Park***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n auditor change. Companies which took external audits for 1996-1998 were used as the sample. Sample companies were classified into 9 industries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Industry Clsssification Codes, and companies which belong to a industry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of small, medium and large compan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external auditor market affects auditor change, i.e. the higher the degree of competition among external auditors in the external auditor market, the higher probability of audior change. But varibles like audit opinion, financial condition, etc. which were showed as factors affected auditor change in the prior researches doesn't show a consistent direction or association in this research.

〈Key words〉 auditor change, audit quality, audit opinio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and Accounting, Kyungwon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